

「행복Together 적금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“행복Together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2계좌만 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지정 가능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 6 조 적립방법

- ① 고객은 이 예금 가입 시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이 제1항의 정기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1천원 이상 5백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고객이 제 1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금액은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, 1개월 적립한도는 1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연 (0.3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 - 1. 이 예금의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온라인뱅킹(인터넷/스마트폰)으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시
(단, 메시지는 가입계좌별로 작성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)
 - 2.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된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
(단,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)

-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한 급여 또는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(0.1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9월 1일 이후 기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.

<부칙1>

본 약관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부칙2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.